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100392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10039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5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김용준(소송구조)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5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장욱, 판사 이정현, 판사 구민경